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1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민병덕・박민규・이수진

김남근 • 김현정 • 김재원

박정현 · 송재봉 · 김영환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그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거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러나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 는 유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대해 유통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2023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 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 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 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 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 조제1항 신설).
-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 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 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 ②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	제4조(증권) ①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	
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	
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u>다만,</u>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삭제></u>
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	
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	
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u>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u>	
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u><삭 제></u>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	<u><삭 제></u>
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	

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 ⑩ (생 략)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 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 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 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단일 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 자를 통한 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 개업자를 통한 거래
- ②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 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 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 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